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9.16(화) 10:00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인증 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(안 제1조, 안 제4조 ~ 안 제5조)

나. 예우 및 지원대상에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인증 기업 조문 신설
(안 제4조, 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예우 및 지원대상에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